

   보도자료 www.customs.go.kr 대변인실 042-481-7616~7			
보도일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자	2019. 4. 29.(월)	담당부서	FTA 협력과
담당과장	양영준 (042-481-3230)	담당자	장진덕 사무관 (042-481-3212)

인도에 복사지 수출시 특혜 세율(0%) 적용 받는다

□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해, 인도 세관에서 한-인도 CEPA* 특혜세율(0%)을 적용하도록 지난 3월 조치했다고 밝혔다.

* CEPA : Comprehensiv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FTA(자유무역협정)' 개념과 유사

○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가 인도에 수출하는 복사지, 전사지 등(HS코드 4809.90)의 관세율이 10%에서 0%가 적용되어 중소 수출업체 등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

□ 관세청은 한국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인도세관에서 동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혜 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태를 주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하였다('18.10).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하여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 적용 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 그 결과 인도 관세당국은 복사지 등(HS 4809.90)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최근 개정하였다('19.3.15).

○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을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업체는 연간 2억원* 상당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인도 수출물량 증가와 신규 바이어 개척 등 인도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복사지 등(HS 4809.90) 對 인도 수출현황 : 2백만불('2018~'2019.3)

□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최근 미얀마 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대상 품목*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파악, 미얀마 관계당국에 조속히 시정하여 줄것을 촉구하였으며, 미얀마측은 지난 2월 시정 조치 완료하였다.

* 구리전선(HS코드 7408.19), 용기뚜껑(3923.50), 만두(1902.20)

□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의 잘못된 관세부과 관행에 대해 주요 통관애로 발생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아울러,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업체가 이와 같은 부당한 관세부과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TA포털(yesfta.customs.go.kr)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세관명	지원센터 전화	E-mail
인천본부세관	032 - 452 - 3644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 - 510 - 1382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 - 620 - 6956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 - 230 - 5183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 - 975 - 8197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 - 8054 - 7047	fta016@korea.kr

[TO BE PUBLISHED IN THE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 PART II, SECTION 3,
SUB-SECTION (i)]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Notification No. 07/2019 - Customs

New Delhi, the 15th March, 2019

G.S.R. (E).-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ub-section (1) of section 25 of the Customs Act, 1962 (52 of 1962), the Central Government, on being satisfied that it is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so to do, hereby makes the following further amendments in the notification of the Government of India in the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Revenue), No.152/2009-Customs, dated the 31st December, 2009, published in the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 Part II, Section 3, Sub-section (i), vide number G.S.R. 943 (E), dated the 31st December, 2009, namely:-

In the said notification, in the TABLE, against serial number 384, for the entry in column (2), the entry, "480920, 480990", shall be substituted.

[F.No.354/107/1996-TRU (Vol. IV)]

(Gunjan Kumar Verma)
Under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Note.- The principal notification No.152/2009-Customs, dated the 31st December, 2009 was published in the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 Part II, Section 3, Sub-section (i), vide number G.S.R. 943 (E), dated the 31st December, 2009 and was last amended by notification No. 83/2018-Customs, dated the 31st December, 2018, published in the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 Part II, Section 3, Sub-section (i), vide number G.S.R 1258 (E), dated the 31st December, 2018.

<참고용 번역>

[인도 정부관보 제 2장 3절 (i)에 게재될 내용]

인도 정부
재정부
(조세국)

고시번호 No.07/2019-Customs

뉴델리 2019년 3월 15일

G.S.R (E) - 1962년도 관세법 25절의 (1)번에 의해 부여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공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인도 정부관보(the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 제2장 3절 (i), vide number G.S.R 943(E)에 게재된 2009년 12월 31일자의 재정부(조세국) 인도 정부고시 No.152/2009-Customs에 추가 개정을 하는 바이다.

언급된 고시내용의 표에서 일련번호 384에 대하여, (2)번째 단의 입력은 "480920, 480990"으로 대체된다.

(Gunjan Kumar Verma)
인도정부

주석 - 2009년 12월 31일자의 고시번호 No.152/2009-Customs는 인도정부 관보(the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의 제 2장 3절 (i)번, vide number G.S.R 943(E)에 2009년 12월 31일에 게재되었고, 2018년 12월 31일자로 인도정부 관보 제 2장 3절 (i), vide number G.S.R 1258(E)에 게재된 고시번호 No. 83/2018-Customs에 의해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